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상미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도시공원 내 무분별한 상행위를 제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, 오산시에서 주최·주관하는 공익 행사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특성과 공원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, 공익 행사 등에 대하여 상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8월 2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(규칙)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,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오산시가 주관·주최하는 공익 행사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31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오산시가 주관·주최하는 공익 행사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.</u>
<u>제31조 (생 략)</u>	<u>제32조 (현행 제31조와 같음)</u>